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11 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5조제4항제2호, 제17조제1항제8호).

법률 제 호
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제2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17조제1항제8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신탁업의 등록 등) ① ~	제5조(신탁업의 등록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	4
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	
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년도의 <u>대차대조표</u>	2 <u>재무상태표</u>
3. • 4. (생 략)	3.•4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모집공고) ① 신탁계약에	제17조(모집공고) ①
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	
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최종 <u>대차대조표</u> 에 따른 현	8 <u>재무상태표</u>
존(現存)하는 재산액	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